

공공기록관리혁신추진과제안

*개선안마련:(즉시)금년도정기국회법안제출필수과제/(단기)금년도말까지/(중기)19년말까지/(장기)20~21년말까지

대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1. 기록관리프로세스 재설계	1-1. 공공기록물의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	즉시
	1-2.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 "BRM과의 관계" 우선 검토	장기
	1-3.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단기/중기/장기
	1-4.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	즉시
	1-5.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장기
	1-6. 기록물 매체수록 전략 수립	단기
2. 기록관리 기반 강화	2-1. 기록관 역할기능 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즉시/단기
	2-2.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 개선	단기
	2-3.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즉시/단기
	2-4.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촉진	즉시/단기
	2-5.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즉시
3. 기록전문직의윤리및 전문성강화	3-1. 기록관리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	단기/중기/장기
	3-2. 기록전문직의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중기
	3-3.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단기/중기/장기
	3-4.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직 연구활동 및 인사교류 촉진	단기
4.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4-1.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	중기
	4-2. 전자기록 이관모델 재설계	중기
	4-3.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단기
	4-4.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및 포맷정책 재설계	중기
5. 기록정보공개·서비스 강화	5-1.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제도 개선	즉시
	5-2. 비공개 상한제도 개선	중기
	5-3.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 기록물 공개	중기
	5-4. 기록물 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단기
	5-5. 기록물 기술(記述)모델 재설계	중기
	5-6. 기록물관리기관 통합 기록정보검색서비스 체계 도입	장기

**세부과제
번호(2-1)**

기록관 역할기능 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 **추진 배경**

- 국가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관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증대
 -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록관 기반 강화가 필수적
 - 전자기록관리환경에서 “기록 생산”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 역할 재정립 필요

□ **추진 내용**

- 기록관 기능 재정립 및 전문요원 배치 기준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개 정 방 향

- 기록관의 기록관리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
 - (전문성)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단계* 통제 기능 강화
 - *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기준 수립, 기록물 평가도구 개발·운영 등
 - (자율성) 자율·책임 운영* 원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통제 최소화
 - * 기록관 설치·운영, 보존기간 관리, 이관대상 선정 및 시기 조정 등
 - ※ 특수기록관 제도 단계적 폐지 검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정책·평가기능 강화
 - 국가기록관리 또는 지방기록관리 거시 정책 수립 기능 강화
 - 영구보존이 필요한 중요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능 강화
 - ※ 기록관 단위의 장기보존 기록물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보존 기록물 구분
 -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원 기능 강화
 - * 기록관 자율 운영을 보장하되, 기록관리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

가. 기록물관리 관련 정의 개정 (법 제3조)

- 기록관의 기록 생산에 관한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그와 관련된 정의 개정
 - “기록”에 대한 정의 개정* 및 그간 해석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된 “생산”에 대한 정의* 신설
 - * 물리적 실체를 연상시키는 “기록물”이라는 용어를 기록으로 개정하고, 문서 등 기록의 유형을 나열하지 않고, “모든 기록정보 자료”로만 정의
 - * 생산이 결재·등록하는 행위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기록정보 자료를 작성하고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생산과 관련된 법령(법 제16조, 영 제16조)에서 구체화

- 기록 유형별 정의*, 기록관리 대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표준·지침에 단계적으로 위임하여 제시

* 예시 : 모든 기록정보 자료(법) > 전자기록물, 웹기록물(영) > SNS, 이메일 등(표준·지침)

** 법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및 영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대해 표준·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풀어 제시하고, 각급 기록관에서 세부 기준 마련

나. 공무원의 의무 개정 (법 제4조)

- 기록의 생산·관리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의무조항 개정
 - 적용대상을 공무원 → 공공기관으로 개정 * 정보공개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참고
 - 보호·관리 의무 외에 “생산”의 의무 추가

다. 기록관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능 개편 (법 제13조)

- 기록관 자율·책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기능 강화
 - 국가 정책의 범위 안에서 각급 공공기관 별로 그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 정책 수립으로 강화
- 기록관 운영 내실화 및 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생산통제 강화
 - 기록의 생산 통제를 위해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관한 기준 수립” 신설
 - ※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관한 표준·지침 등을 참고하여 각급 기관별로 별도 기준 수립
 - * 각급 기관의 중요 기록결재·등록되지 않은 기록물 포함 및 다양한 유형·형태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정의된 기록관 기능 중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2호), 이관(4호) 등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로 포괄하여 정의
 - *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관의 자체 점검·교육 기능 강화
 - 현재 개별 조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태의 확인·점검, 교육·훈련 기능을 기록관 기능으로 신설 또는 보완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협력·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기록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록물관리기관 간 연계·협조 기능* 신설
 - * 현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기능에만 포함되어 있음

- 기록관리와의 연관성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또는 총괄)로 개정
 - 정보공개책임관을 기록관 내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등 검토

라.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 (영 제10조)

- 시행령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 정부산하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기록관 설치 및 관리기준(규칙 제2조)을 시행령으로 상향
 -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자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 삭제 (필요한 경우 통합기록관 가능)
-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개 이상의 기록관 설치 의무화
 - 설치·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대상 기관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고시
 - 기관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의 기록관이 기록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부서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그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기록관이 지도·감독
- 특수기록관 제도 폐지 검토

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 (영 제78조)

-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 및 특성을 충족하는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인력구성 및 소요인력 산출 기준 마련
 -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 기록관리 기능·절차 등을 고려한 필수 인력구성 모델 연구·개발
 - ※ 영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의 구성 구체화
 - 기록관리 업무량(처리과수, 직원수 등 고려)에 따른 소요인력(정원) 산출 기준 마련
- ▷ 동 모델은 자체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표준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주기적 현행화 → 해당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정원 확보·배치

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 (영 제78조)

-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역량 및 자격 요건 분석
 - 대학원·교육원 등 교과과정 분석 및 전문요원 자격제도(영 제78조*) 재검토
 -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로 제한, 교육원 및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인력 배출 등
- ⇒ 동 제도의 개선은 학계, 자격취득자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검토

□ 추진 전략 및 일정

- 기록관 담당자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확정(4월 말)
 - (중앙) 대전권 기 개최(4.3.), 세종권 개최 예정(4.19.)
 - (지방) 시·도에서 기초단체 의견수렴 후 협의 추진(4월말)
 - (정부산하) 정부산하공공기관 협의회를 통해 의견수렴

□ 쟁점 사항

- 기록관리와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기록관 기능강화의 방향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기록관 자율운영 방침 및 전문성 강화가 1인 기록관 체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

VS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요원 배치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 ⇒ 기록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 및 역할 정립이 요구됨

주관	기록협력과(임근혜)	협조	부서명(담당자명)
----	------------	----	-----------

**세부과제
번호(2-2)**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각급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평가제도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공정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기록관리 발전방안 조성
- 법령 중심의 망라적·획일적 평가에서 기관별 여건 및 이행단계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필요
 - 평가제도 개선 과정에 각급기관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기관평가의 객관성, 유효성 확보

□ 추진 내용

- 기록관리현황 기관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 지난 10년간('08~'17)의 기록관리 평가 점검·분석 및 사례조사
 -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학계 등 의견 수렴
 - 기록관리 평가 개선안 마련 및 평가도구·지표 개발
- 개발된 평가도구·지표 시범 적용 및 보완

□ 추진 전략 및 일정

- 기록관리현황 기관평가 제도개선안 마련(단기)
 - 지난 10년간('08~'17)의 기록관리 평가 점검·분석 및 사례조사(~6월)
 - 그간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지표에 대한 기관 유형별 타당성 검토 및 문제점 도출
 - 국내 정부업무 평가 및 해외 기록관리 관련 평가사례 조사

-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학계 등 의견 수렴(6월~)
 - 기관 유형·수준별 현장방문 조사, 유형·지역별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 기록관리 학·협회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8월~)
- 기록관리 평가 개선안 마련 및 평가도구·지표 개발(~11월)
 - 기록관리 평가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안 도출, 중장기적 전략 수립
 - 유형·수준별 평가도구·지표 개발 및 기관 규모, 기록물보유량에 따른 차별화된 적용방안 마련, 평가대상기관 및 적용시기 검토
 - 실효성 있는 평가 환류책 마련(포상, 미흡기관 지도방안 등)
- 개발된 평가도구·지표 시범 적용 및 보완(중기)
 - 기관 유형·수준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고 결과 분석 후, 보완 및 개선
 - 개선안에 대해 피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반영('19년)

□ 조치 필요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령상 규정 제·개정 필요(중기)

구분	제·개정 필요 조문
법률	-
시행령	개정 필요(제63조 기록관리 평가)

- 시스템 개편 필요(중기)
 - 기관평가 도구·지표개발에 따른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 개편

주관	정책기획과(이아현)	협조	수집기획과(송헌규, 노은정)
----	------------	----	-----------------

**세부과제
번호(2-3)**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이 낮아 법령 준수와 인프라 구축 소극적
- 법령·제도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법령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
 - ※ 기록물 자체 관리가 원칙, 기록관리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이드 부재

□ **추진 내용**

-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록물법령 정비
 - 공공기관의 범위 및 기록관리 대상기관 조정(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관 유형별 핵심기록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범위 구체화
 - ※ 행정기록 중심⇒사업·연구 등 공공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기록물로 확대
 - 기록관 기능*과 업무 범위 및 설치기준** 재검토
 - * 기록물 자체보존에 필요한 아카이브 기능 추가
 - ** 기관 규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록관 설치 기준 다양화
- 공공기관에 맞는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 조사·연구·검토서 및 회의록 작성 대상기준, 장기보존 기록물 관리 등 업무 방식과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하여 재설계
- 공공기관 기록관리 지원 강화
 - 기관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지원방안 마련
 - 기관 유형별 분류체계, 매뉴얼 등 공동 개발 또는 개발 지원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제고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강화
 - 공공기관의 감독관청을 통해 기록관리 이행 여부 감사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학 평가 등에 기록관리 지표 반영

<공공기관 현황>

(2018. 3.)

정부산하 공공기관	총계	합 계	1호 (기획재정부 고시 기관)				2호 (지방공사 공단)	3호 (특수 법인)	합계	국공립 대학	사립 대학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기관 수	1,014	604	322	35	80	207	147	135	410	50	360

□ 추진 전략 및 일정

- 우리 원과 공공기관 간 협업체제로 추진(3~12월)
 - 기록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록관리 현장의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과 제도사이의 간극을 줄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반영(4~12월)
 - 공공기관의 기관유형별·지역별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청취
 - 기관별 협의회*와 소통·논의구조를 마련하여 제도안 수시 검토

*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 소속 공공기관 협의회, 대학기록관리협의회 등

-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안 마련(9월)
 - 공공기관에 맞는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하여 시행령(안) 마련
 - 타 혁신과제와 연계* 또는 협의**하여 추진

* 기록관 기능 개편, 설치 기준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기록평가정책, 기관평가 등

** 기록관리 점검, 기록관리 지원 등(기록협력과, 기획수집과, 기록관리교육센터 등)

□ 조치 필요사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공공기관 기록관리 규정 제정
- 국가기록원 조직과 기능 개편 시 공공기관 지원 업무기능 강화

□ 쟁점 사항

- 공공기관용 기록관리법령 별도 제정 여부
 - 행정기관 위주의 법령 체계에서 공공기관 업무환경에 맞게 전환 필요
 - * 공공기록물법령 시행령 제정 또는 별도의 장(章) 구성 등 검토
- 직접관리기관 제도 전면 폐지 여부
 - 직접관리기관을 폐지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자율성 부여 및 지원 확대 필요
 - ※ 직접관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현황평가 등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음
 - 전문요원 배치 및 기관의 기록관리 인식도 여부에 따라 직접관리기관 확대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뉨

<직접관리기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 및 고시하는 기관으로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확정, 기록관리 현황평가 수검의 의무 부여 ※현재 40개 기관 지정

<지정 기준>

구분	'09년	'12년
정량지표	존속기간(10년 이상)	존속기간(10년 이상)
	자산규모(1조 이상)	
	인원(500명 이상)	인원(100명 이상)
정성지표	설립목적	기관의 공공성 여부
	수행업무	기록관리 수행 가능성

주관	기록협력과(김양희)	협조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광역시도교육청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등
----	------------	----	--

**세부과제
번호(2-4)**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촉진

□ 추진 배경

- 지방의 기록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장기화에 따른 설립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추진 내용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지방기록문화 거점으로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확대(광역시도교육청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능 역할 강화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지원체계 마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방안(예산, 인력 등)을 모색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안착을 위한 업무지원 체계 마련

□ 추진 전략 및 일정

-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과제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3.27.)
 - 참석자 : 광역시·도(교육청) 담당 팀장·업무담당, 공공기록관리혁신팀 참여 전문요원 등(62명)

- 논의내용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 대상기관 확대(광역시도교육청)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 개선의 실효성은 부정적임
- **현 시점에서 의무 설치 대상기관 확대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혁신과제 추진 일정 ‘장기과제’로 수정(즉시→장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단기)
 - * 기존 현황 분석,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방향 등 설치 활성화 전략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대상기관 확대 등 제도개선(안) 의견조희(단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단기)

조치 필요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령상 규정 제·개정 필요

구분	제·개정 필요 조문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장기)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표준	

- 관계 부처(부서) 협의 또는 타 법령에 반영 필요
 - 법 제11조 : 광역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직실, 정책기획과 등

쟁점 사항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대상 확대(광역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주관	기록협력과(김양희)	협조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	-----------	-------------

**세부과제
번호(2-5)**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 추진 배경

- 현재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가 아닌 국가기록원의 수행업무를 심의·자문하는 기능 수행
-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자격이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짐

□ 추진 내용

- 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상은 유지하되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내실화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중심으로 심의대상을 확대·활성화하고 국가기록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 권한 강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재편 및 책임성 제고
 -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구성토록 함
 -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을 포함하는 거버넌스형 기구 지향**

□ 추진 전략 및 일정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 기능, 위원구성, 운영 등 법령 개정(안) 혁신단 제출 : '18. 3. (현재 법령개정(안) 협의 중)
 - ※ 혁신과제 추진 일정 상 '즉시 과제'

□ 조치 필요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령상 규정 제·개정 필요

구분	제·개정 필요 조문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2조~제15조
시행규칙	
지침/표준	

- 관계 부처(부서) 협의 또는 타 법령에 반영 필요
 - 정책기획과

□ 쟁점 사항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결기능 부여와 상정 안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위원회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 다양화 측면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장' 대표성 확보방안